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
람	의장

제1797호 2023. 11. 13.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8호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_____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0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939호선, 소로1-312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_____ 3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9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92호 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_____ 13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329호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900호선) 공사완료 공고 _____ 43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344호 도시관리계획【공원조성계획: 검단17호근린공원】결정(변경)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_____ 45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3-188호
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1990-182호(1990. 12. 26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【공공청사, 사업명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부지 내 부설주차장 확장공사】 사업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032-560-4763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23. 11. 13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 없음)

-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8-8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
- 명칭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부지 내 부설주차장 확장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 없음)

- 면적: 761.7㎡
- 규모: 주차장 25면(장애인 1면)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
- 성명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- 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- 기정: 실시계획 인가일 ~ 2023. 12. 31.
- 변경: 실시계획 인가일 ~ 2025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구분	소재지	지 번	지목	면적(m ²)		소 유 자		관계인		비고
				지적	편입	성명	주 소	성명	주소	
1	석남동	488-8	대	761.7	761.7	국(기획재정부)	-	-	-	-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3-190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939호선, 소로1-312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인천광역시고시 제2020-460호(2020. 12. 21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【도로: 중로2-939호선, 소로1-312호선, 사업명: 인천 대곡동~불로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】 사업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032-560-4763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23. 11. 13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 없음)

-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, 불로동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939호선, 소로1-312호선)
- 명칭: 인천 대곡동~불로지구 연결도로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 없음)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연장 (m)	면적 (㎡)	비고
도로	중로	2	939	15.5 (15.5~60.0)	950	42,205	
도로	소로	1	312	11 (11.0~22.0)	95	1,508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
- 성명: 인천도시공사 사장
- 주소: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(만수동)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)

- 기정: 실시계획 인가일 ~ 2023. 12. 31.
- 변경: 실시계획 인가일 ~ 2024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(변경 없음)

- 따로 붙임
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

인천광역시 서구

블로동

일련 번호	지 번	지목	지 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비고
					성명	주소	
1	54-20	답	822	822	공	인천광역시	
2	54-11	답	28	28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3	54-12	답	1,053	1,05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4	54-13	전	1,748	1,748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	54-14	전	1,186	1,186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6	54-15	전	1,804	1,804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7	54-16	전	832	832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8	54-17	답	873	87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9	54-18	답	740	740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10	57-5	답	615	615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11	520-16	구	1,246	1,246	국	농림축산식품부	
12	57-6	답	442	442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13	57-7	전	714	714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14	57-8	전	433	43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15	57-9	답	773	77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16	520-17	구	76	76	국	농림축산식품부	
17	520-18	구	61	61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18	520-19	구	43	43	국	농림축산식품부	
19	48-15	과	935	935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20	48-12	과	878	878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21	48-10	대	557	557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22	48-9	창	568	568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23	413-2	도	33	3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24	736-14	도	64	64	국	국토교통부	
25	414-3	도	144	144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26	414-9	도	83	8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27	61-11	답	1,172	1,172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28	61-13	답	693	69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29	61-15	답	483	48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30	61-19	답	347	347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
일련 번호	지 번	지목	지 적 (㎡)	면적면적 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성 명	주 소	
31	61-16	대	519	519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32	409-11	전	430	430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33	570-32	구	248	248	국	농림축산식품부	
34	570-33	구	4	4	국	농림축산식품부	
35	409-13	전	728	728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36	409-14	전	1	1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37	570-29	구	1	1	국	농림축산식품부	
38	409-17	도	560	560	공	인천광역시	
39	520-20	도	71	71	국	농림축산식품부	
40	52-17	답	93	93	공	인천광역시	
41	520-22	구	38	38	국	농림축산식품부	
42	520-23	구	62	62	국	농림축산식품부	
43	52-16	전	59	59	공	인천광역시	
44	52-18	답	128	128	공	인천광역시	
45	52-14	답	143	14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46	52-15	답	59	59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47	52-11	답	175	175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48	52-12	답	228	228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49	52-8	답	151	151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0	51-10	답	321	321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1	51-11	답	113	11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2	51-9	답	243	24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3	51-8	답	582	582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4	51-7	답	219	219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5	51-6	답	925	925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6	520-15	도	1,770	1,770	국	농림축산식품부	
57	50-8	답	1,061	1,061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8	50-7	답	1,147	1,147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59	50-6	답	1,737	1,737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60	50-5	과	1,120	1,120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61	50-9	과	1,141	1,141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
일련 번호	지 번	지목	지 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성 명	주 소	
62	48-17	전	163	16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63	48-19	답	727	727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64	48-14	전	2,286	2,286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65	48	대	658	21	김**	경기도 김포시 검단* *** **	
66	415-5	답	192	192	국	기획재정부	
67	415-24	도	84	84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68	736-28	도	20	20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69	415-25	도	609	609	공	인천광역시 서구	
70	415-22	도	192	192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71	415-26	도	27	27	공	인천광역시	
72	59-4	답	1	1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73	59-5	답	2,120	2,120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74	59-7	답	771	771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75	59-9	답	1,126	1,126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76	570-28	구	155	155	국	농림축산식품부	
77	61-21	전	811	811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78	61-17	답	393	39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79	568-17	구	26	26	국	농림축산식품부	
80	486-17	도	4	4	공	인천광역시	
81	415-19	도	69	69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82	414-2	도	16	16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83	414-1	전	3	3	인천도시공사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42(만수동)	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-191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1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·폐지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77 외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·폐지 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램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11.13.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

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3-11-13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5-15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77 (청라동)	20120330	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?? 이 있음을 부각	
2	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58-2	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707번길 24 (공촌동)	20090710	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,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997-6	인천광역시 서구 당곡로 16 (원당동)	20200720	당곡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	
4	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43	인천광역시 서구 향동1길 5 (금곡동)	20090922	향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번째로 분기된 도로	
5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335-3	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81번길 4 (오류동)	20200720	반월로 시점에서 810미터 지점에서 분기한 도로	
6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81-2	인천광역시 서구 도곡로 225-1 (대곡동)	20130730	도치울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	
7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-60	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2번안길 9-16 (원창동)	20131202	북향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8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0	인천광역시 서구 경중로 53 (경서동)	20201123	서구의 경제상업 중심지에서 착안	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(분할)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3-11-13

연번	도로명주소		도로명주소 변경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			
1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211 (대곡동)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213 (대곡동)	소유자 신청	20130730	법정동 명칭 반영	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-192호

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(도시계획과, ☎ 560-687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3. 11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I. 결정(변경)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

II. 위치

-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-51번지

III. 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-	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, 석남동 일원	2,093,078.8㎡	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-237호 (2006.12.18)	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□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)

가) 교통시설(변경)

■ 도로 총괄표(변경)

구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	
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
합계	기정	43	17,854	394,090.0	10	6,115	180,769.7	32	11,079	190,967.8	2	660	22,352.5
	변경	43	17,854	394,202.5	10	6,115	180,769.7	32	11,079	191,080.3	2	660	22,352.5
	증감	-	-	증)112.5	-	-	-	-	-	증)112.5	-	-	-
광로	1	487	20,230.3	-	-	-	-	-	-	1	487	20,230.3	
대로	8	5,292	180,721.1	4	3,101	113,094.9	4	2,191	67,626.2	-	-	-	
중로	기정	30	11,508	188,373.6	5	2,901	66,541.8	25	8,434	119,709.5	1	173	2,122.2
	변경	30	11,508	188,486.1	5	2,901	66,541.8	25	8,434	119,822.1	1	173	2,122.2
	증감	-	-	증)112.5	-	-	-	-	-	증)112.5	-	-	-
소로	4	567	4,765.0	1	113	1,133.0	3	454	3,632.0	-	-	-	

■ 도로 결정조서(변경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광로	3	3	40~46	주간선 도로	1,761 (487)	원창동 대1-16	원창동 대1-17	일반 도로	-	인고 제158호 '06.9.11.	가감속차로계획 ()는 구역내
기정	대로	1	7	35~41	보조간선도로	3,100 (574)	광1-14	대1-17	일반 도로	-	인고 제1386호 '88.9.23.	()는 구역내

구분	구 도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1	14	35~41	보조간 선도로	14,700 (989)	원창동 대2-38	장수동 광3-7	일반 도로	-	건고 제75호 `75.5.20.	()는 구역내
기정	대로	1	16	35~41	주간선 도로	1,528 (984)	광2-4	대 3-92	일반 도로	-	건고 제54호 `70.2.9.	()는 구역내
기정	대로	1	17	35	주간선 도로	3,061 (554)	중로3-194 원창동434	광로3-3	일반 도로	-	1986.9.29	()는 구역내
기정	대로	2	29	30	보조간 선도로	4,250 (267)	가좌동 대2-32	대1-14	일반 도로	-	건고 제75호 `75.5.16.	()는 구역내
기정	대로	2	37	30	국지 도로	1,085 (764)	대1-7	원창동 395-7	일반 도로	-	인고 제1386호 `88.9.23.	()는 구역내
기정	대로	2	40	30~36	국지 도로	850 (558)	원창동 대1-17	대1-7 (울도)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()는 구역내
기정	대로	2	116	30	국지 도로	602	대2-40	대1-17	일반 도로	-	인고 제290호 `16.11.21.	
기정	중로	1	1	20	집산 도로	803	대1-7	대2-29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1	2	20	집산 도로	550	광3-3	대2-37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1	3	20	집산 도로	578	광3-3	대1-7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1	4	20	집산 도로	970	대1-7	대2-40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1	5	20	국지 도로	550	대1-14	대2-37	일반 도로	-	인고 제50호 `14.3.10.	
기정	중로	2	1	15	국지 도로	219	대1-16	중2-2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2	2	15	집산 도로	1,162	대1-14	중2-8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2	3	15	국지 도로	265	대1-14	중2-4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2	4	15	국지 도로	311	중2-7	중2-2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2	5	15	국지 도로	167	중2-4	중2-2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2	6	15	집산 도로	173	중2-7	중2-5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2	7	15	집산 도로	442	대1-14	중2-2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2	8	15	국지 도로	262	대1-7	중2-7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기정	중로	2	9	15	국지 도로	197	중2-2	중2-7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`12.1.16.	

구분	구 도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11	15	국지 도로	550	광3-3	대2-37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12.1.16.	
기정	중로	2	12	15	국지 도로	550	광3-3	대2-37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12.1.16.	
기정	중로	2	900	15~18.5	국지 도로	266	대로1-14	중로2-1	일반 도로	-	인고 제6호 16.1.18.	
기정	중로	2	901	15	집산 도로	225	대로1-16	중로2-2	일반 도로	-	인고 제6호 16.1.18.	
기정	중로	2	902	15	국지 도로	172	중로2-1	중로2-901	일반 도로	-	인고 제6호 16.1.18.	
기정	중로	2	910	15	국지 도로	455	대2-29	중2-920	일반 도로	-	인고 제290호 16.11.21.	
기정	중로	2	918	15	국지 도로	350	원창동 대2-40	중1-4	일반 도로	-	인고 제169호 14.7.28.	
변경	중로	2	919	15 →(15~18)	국지 도로	353	원창동 대2-40	중1-4	일반 도로	-	인고 제169호 14.7.28.	
기정	중로	2	920	15~20	국지 도로	232	중1-1	석남동 342-13	일반 도로	-	인고 제123호 16.6.7.	
기정	중로	2	928	15	국지 도로	600	대2-40	대1-17	일반 도로	-	인고 제240호 17.10.16.	
기정	중로	2	929	15	국지 도로	283	대2-116	중2-928	일반 도로	-	인고 제240호 17.10.16.	
기정	중로	2	930	15	국지 도로	272	대2-116	중2-928	일반 도로	-	인고 제240호 17.10.16.	
기정	중로	2	931	15	국지 도로	124	구역경계	대2-116	일반 도로	-	인고 제240호 17.10.16.	
기정	중로	2	932	15	국지 도로	130	구역경계	대2-116	일반 도로	-	인고 제240호 17.10.16.	
기정	중로	2	933	15	국지 도로	124	중2-5	중2-2	일반 도로	-	인고 제240호 17.10.16.	
기정	중로	3	1	12	국지 도로	173	중2-7	중2-3	일반 도로	-	인고 제5호 12.1.16.	
기정	소로	1	1	10	특수 도로	113	광2-4	중2-2	보행 자 전용 도로	-	인고 제5호 12.1.16.	
기정	소로	2	1	8	국지 도로	291	중로2-901	중로2-901	일반 도로	-	인고 제6호 16.1.18.	
기정	소로	2	2	8	국지 도로	82	중로2-901	소로2-1	일반 도로	-	인고 제6호 16.1.18.	

구분	구 도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2	3	8	국지 도로	81	중로2-901	소로2-1	일반 도로	-	인고 제6호 16.1.18.	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 내 용	변 경 사 유
중로 2-919	중로 2-91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감속차로 조성 - B = 15m → 15~18m(증 3m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고, 그에 따른 도로 일부 구간 폭원 변경

■ 주차장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도 면 표시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1	주차장	원창동 381-40번지	5,642	인고 제5호 12.1.16.	-
기정	2	주차장	원창동 381-64번지	1,300	인고 제5호 12.1.16.	-
기정	3	주차장	원창동 495번지	782.5	인고 제6호 16.1.18.	-

나) 공간시설 (변경없음)

■ 공원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도 면 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1	제1공원	근린공원	원창동 486-1번지	14,210.8	인고 제5호 12.1.16.	-
기정	2	제2공원	근린공원	원창동 485-5번지	76,368.2	인고 제5호 12.1.16.	-
기정	3	제3공원	소공원	원창동 495-1번지	469.5	인고 제6호 16.1.18.	-

■ 녹지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1	녹지	완충녹지	석남동 660-2번지	22,954.6	인고 제5호 `12.1.16.	-
기정	2	녹지	완충녹지	원창동 487-2번지	1,210.3	인고 제5호 `12.1.16.	-
기정	3	녹지	완충녹지	원창동 494번지	9,741.0	인고 제5호 `12.1.16.	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(659㎡)
기정	4	녹지	완충녹지	원창동 486-7번지 일원	16,911.9	인고 제5호 `12.1.16.	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(7,727㎡)
기정	5	녹지	완충녹지	원창동 485-4번지 일원	16,110.0	인고 제5호 `12.1.16.	유류저장및송유설비와 중복결정(1,857㎡)
기정	7	녹지	완충녹지	원창동 491번지 일원	1,922.1	인고 제6호 `16.1.18.	-
기정	1	녹지	경관녹지	석남동 659-4번지	6,905.5	인고 제290호 `16.11.21.	-
기정	2	녹지	경관녹지	석남동 659-5번지	3,833.7	인고 제290호 `16.11.21.	-

다)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없음)

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-	유류저장 및 송유설비	원창동 196-7번지 일원	436,326 (25,428)	1984.8.14	()구역내 면적 녹지 3,4,5와 중복결정 (10,243㎡)
기정	-	유류저장 및 송유설비	원창동 379번지 일원	141,246.7	인고 제6호 `95.1.12.	-

라) 공공·문화체육시설 (변경없음)

■ 공공청사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1	공공청사	공공청사	원창동 381-39번지	3,443.1	인고 제5호 '12.1.16.	-
기정	2	공공청사	소방서	원창동 381-123번지	3,445.9	인고 제79호 '18.4.9.	
기정	3	공공청사	공공청사	원창동 381-125번지	1,756.3	인고 제79호 '18.4.9.	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1	사회복지시설		원창동 381-124번지	1,755.2	인고 제79호 '18.4.9.	-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■ 공업용지(기정)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계			36획지 70필지	895,104.6		
I	I -1(1)	61,685.5	1	-	17,293.4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-	21,772.2	
			3	-	22,619.9	
	I -1(2)	23,041.1	1	-	11,393.9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-	11,647.2	
	I -1(3)	54,424.1	1	-	12,502.3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-	12,501.5	
			3	-	15,032.6	
			4	-	14,387.7	
	I -1(4)	52,822.2	1	-	12,581.7	
			2	-	12,581.3	
			3	-	14,073.9	
			4	-	13,585.3	
	I -1(5)	50,386.8	1	-	12,502.1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-	12,501.7	
			3	-	12,932.4	
			4	-	12,450.6	
	I -1(6)	24,267.5	1	-	12,005.9	
			2	-	12,261.6	
	I -1(7)	25,187.6	1	-	12,466.6	
			2	-	12,721.0	
	I -2(1)	51,290.4	1	-	14,048.0	
			2	-	16,891.1	
			3	-	20,351.3	
	I -2(2)	93,933.2	1	-	18,017.2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-	8,936.8	
			3	-	8,899.6	
			4	-	18,520.8	
			5	-	13,200.5	
			6	-	12,937.4	
7			-	13,420.9		
I -2(3)	41,735.0	1	-	14,383.5		
		2	-	13,620.7		
		3	-	13,730.8		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I	I -3	21,846.8	1	3,360.8	-	-
			2	3,360.8	-	-
			3	3,360.8	-	-
			4	3,387.2	-	-
			5	3,387.2	-	-
			6	4,990.0	-	-
	I -4	31,793.0	1	3,992.1	-	-
			2	3,975.1	-	-
			3	3,963.8	-	-
			4	3,969.3	-	-
			5	3,983.6	-	-
			6	3,976.7	-	-
			7	3,964.1	-	-
			8	3,968.3	-	-
	I -5	27,133.1	1-1	3,388.85	-	-
			1-2	3,388.85	-	-
			2-1	3,399.05	-	-
			2-2	3,399.05	-	-
			3	6,770.3	-	-
			4-1	3,393.50	-	-
			4-2	3,393.50	-	-
	I -7	79,177.9	1	59,913.7	-	-
			2	-	19,264.2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I -8	63,091.6	1-1	29,862.8	-	-
			1-2	33,228.8	-	-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I	I -9	32,665.9	원창동 488	-	4,024.6	주2,3) 필지 분할 가능 (북향목재단지)
			원창동 488-1	-	2,529.5	
			원창동 488-2	-	3,214.5	
			원창동 488-3	-	3,578.1	
			원창동 488-4	-	2,529.3	
			원창동 488-5	-	2,529.3	
			원창동 488-6	-	2,529.3	
			원창동 488-7	-	2,299.7	
			원창동 488-8	-	2,242.1	
			원창동 488-9	-	2,389.2	
			원창동 488-10	-	2,400.2	
	원창동 488-11	-	2,400.1			
	I -10	22,995.3	원창동 489	-	2,532.5	
			원창동 489-2	-	13,223.2	
			원창동 489-3	-	2,611.6	
			원창동 489-4	-	4,628.0	
	I -11	19,564.7	원창동 498	-	2,937.6	
			원창동 498-1	-	1,814.3	
			원창동 498-2	-	1,600.0	
			원창동 498-3	-	2,070.6	
			원창동 498-4	-	1,600.0	
			원창동 498-5	-	1,651.2	
			원창동 498-6	-	1,651.2	
			원창동 498-7	-	1,651.1	
			원창동 498-8	-	1,651.1	
			원창동 498-9	-	2,937.6	
	I -12	12,437.5	원창동 497	-	1,983.5	
			원창동 497-1	-	2,313.9	
			원창동 497-2	-	1,978.2	
			원창동 497-3	-	1,978.3	
			원창동 497-4	-	1,983.4	
			원창동 497-5	-	2,200.2	
	I -13	5,405.7	원창동 496	-	5,405.7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위치	획지	필지	비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I	I-14(1)	56,460.3	1	-	56,460.3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I-14(2)	27,798.4	2	-	27,798.4	
	I-15	15,961.0	1	1,438.0	-	-
			2	1,416.0	-	-
			3	1,395.0	-	-
			4	1,373.0	-	-
			5	1,352.0	-	-
			6	1,331.0	-	-
			7	1,309.0	-	-
			8	1,288.0	-	-
			9	1,266.0	-	-
			10	1,245.0	-	-
			11	1,223.0	-	-
			12	1,325.0	-	-

주1) I-1(1)~1(7), I-2(1)~2(3), I-7-2, I-14(1), I-14(2) 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

주2)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지 분할 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주3) I-9~I-13 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가능

● I-9~13 (북항목재단지) 필지 분할 요건

구분	분할 요건	기타
필지형태	정방형 또는 장방형(1:1~2이하)	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※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 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
필지규모	I-9, I-10: 2,400㎡ 주1) 이상 I-11, I-12, I-13: 1,600㎡ 주1) 이상	
전면도로	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	

주1)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,600㎡ 적용,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,400㎡ 적용

● I-1(1)~1(7), I-2(1)~2(3), I-7-2, I-14(1)~14(2) 필지 분할 요건

구분	분할 요건	기타
필지형태	정방형 또는 장방형(1:1~2이하)	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※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 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
필지규모	최소필지규모 3,500㎡ 이상	
전면도로	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	

■ 공업용지(변경)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계			36획지 70필지	894,992.1 (감 112.5)		
I	I -1(1)	61,685.5	1	-	17,293.4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-	21,772.2	
			3	-	22,619.9	
	I -1(2)	23,041.1	1	-	11,393.9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-	11,647.2	
	I -1(3)	54,424.1	1	-	12,502.3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-	12,501.5	
			3	-	15,032.6	
			4	-	14,387.7	
	I -1(4)	52,822.2	1	-	12,581.7	
			2	-	12,581.3	
			3	-	14,073.9	
			4	-	13,585.3	
	I -1(5)	50,386.8	1	-	12,502.1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-	12,501.7	
			3	-	12,932.4	
			4	-	12,450.6	
	I -1(6)	24,267.5	1	-	12,005.9	
			2	-	12,261.6	
	I -1(7)	25,187.6	1	-	12,466.6	
			2	-	12,721.0	
	I -2(1)	51,290.4	1	-	14,048.0	
			2	-	16,891.1	
			3	-	20,351.3	
I -2(2)	93,820.7 (감 112.5)	1	-	18,017.2	주1,2) 필지 분할 가능	
		2	-	8,936.8		
		3	-	8,899.6		
		4	-	18,520.8		
		5	-	13,088.0 (감 112.5)		
		6	-	12,937.4		
		7	-	13,420.9		
I -2(3)	41,735.0	1	-	14,383.5		
		2	-	13,620.7		
		3	-	13,730.8		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I	I -3	21,846.8	1	3,360.8	-	-
			2	3,360.8	-	-
			3	3,360.8	-	-
			4	3,387.2	-	-
			5	3,387.2	-	-
			6	4,990.0	-	-
	I -4	31,793.0	1	3,992.1	-	-
			2	3,975.1	-	-
			3	3,963.8	-	-
			4	3,969.3	-	-
			5	3,983.6	-	-
			6	3,976.7	-	-
			7	3,964.1	-	-
			8	3,968.3	-	-
	I -5	27,133.1	1-1	3,388.85	-	-
			1-2	3,388.85	-	-
			2-1	3,399.05	-	-
			2-2	3,399.05	-	-
			3	6,770.3	-	-
			4-1	3,393.50	-	-
			4-2	3,393.50	-	-
	I -7	79,177.9	1	59,913.7	-	-
			2	-	19,264.2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I -8	63,091.6	1-1	29,862.8	-	-
			1-2	33,228.8	-	-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I	I -9	32,665.9	원창동 488	-	4,024.6	주2,3) 필지 분할 가능 (북항목재단지)
			원창동 488-1	-	2,529.5	
			원창동 488-2	-	3,214.5	
			원창동 488-3	-	3,578.1	
			원창동 488-4	-	2,529.3	
			원창동 488-5	-	2,529.3	
			원창동 488-6	-	2,529.3	
			원창동 488-7	-	2,299.7	
			원창동 488-8	-	2,242.1	
			원창동 488-9	-	2,389.2	
			원창동 488-10	-	2,400.2	
	원창동 488-11	-	2,400.1			
	I -10	22,995.3	원창동 489	-	2,532.5	
			원창동 489-2	-	13,223.2	
			원창동 489-3	-	2,611.6	
			원창동 489-4	-	4,628.0	
	I -11	19,564.7	원창동 498	-	2,937.6	
			원창동 498-1	-	1,814.3	
			원창동 498-2	-	1,600.0	
			원창동 498-3	-	2,070.6	
			원창동 498-4	-	1,600.0	
			원창동 498-5	-	1,651.2	
			원창동 498-6	-	1,651.2	
			원창동 498-7	-	1,651.1	
			원창동 498-8	-	1,651.1	
			원창동 498-9	-	2,937.6	
	I -12	12,437.5	원창동 497	-	1,983.5	
			원창동 497-1	-	2,313.9	
			원창동 497-2	-	1,978.2	
			원창동 497-3	-	1,978.3	
			원창동 497-4	-	1,983.4	
			원창동 497-5	-	2,200.2	
	I -13	5,405.7	원창동 496	-	5,405.7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위치	획지	필지	비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I	I-14(1)	56,460.3	1	-	56,460.3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I-14(2)	27,798.4	2	-	27,798.4	
	I-15	15,961.0	1	1,438.0	-	-
			2	1,416.0	-	-
			3	1,395.0	-	-
			4	1,373.0	-	-
			5	1,352.0	-	-
			6	1,331.0	-	-
			7	1,309.0	-	-
			8	1,288.0	-	-
			9	1,266.0	-	-
			10	1,245.0	-	-
			11	1,223.0	-	-
12	1,325.0	-	-			

주1) I-1(1)~1(7), I-2(1)~2(3), I-7-2, I-14(1), I-14(2) 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

주2)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지 분할 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주3) I-9~I-13 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가능

■ 공업용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I-2(2)	5	• 가감속차로 조성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- 13,200.5㎡ → 13,088.0㎡ (감112.5㎡)	•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필지면적 감소

• I-9~13 (북향목재단지) 필지 분할 요건

구분	분할요건	기타
필지형태	정방형 또는 장방형(1:1~2이하)	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※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 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
필지구모	I-9, I-10: 2,400㎡ 주1) 이상 I-11, I-12, I-13: 1,600㎡ 주1) 이상	
전면도로	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	

주1) 산업단지 개발 업무편람상 내륙경공업 기본획지 1,600㎡ 적용, 대로변의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고려하여 2,400㎡ 적용

• I-1(1)~1(7), I-2(1)~2(3), I-7-2, I-14(1)~14(2) 필지 분할 요건

구 분	분할 요건	기 타
필지형태	정방형 또는 장방형(1:1~2이하)	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※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 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
필지규모	최소필지규모 3,500㎡ 이상	
전면도로	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	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위 치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
계			22 필지	104,833.7	
II	II-1	16,595.7	1	16,595.7	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: 3,500㎡
	II-2	16,323.8	1	4,165.7	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: 3,500㎡
			2	4,142.4	
			3	1,082.8	
			4	6,932.9	
	II-3	71,914.2	1	6,100.1	필지분할가능 최소필지규모 : 3,500㎡
			2	6,292.1	
			3	9,531.8	
			4	9,559.3	
			5	3,379.2	
			6	1,534.7	
			7	91.3	
			8	1,515.0	
			9	2,850.8	
			10	4,457.0	
			11	456.0	
			12	3,046.0	
13			6,612.0		
14	2.7				
15	8,079.9				
16	3,506.2				
17	4,900.1				

※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,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, 결정된 필지 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 시 분할가능

● II-1~3가구 필지분할 요건

구분	분할 요건	기타
필지형태	단변과 장변의 비(1:1~3이하)	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 분할 가능 (단, 소규모 필지를 3,500㎡ 이상으로 합병하기 위한 분할은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)
필지규모	최소필지규모 3,500㎡ 이상	
전면도로	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	

※ 소규모(3,500㎡이하) 필지: 원창동 388-6, 388-9, 395-9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위 치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
계			12 필지	196,744.7	
II	II-4	98,905.4	1	16,313.7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16,626.0	
			3	16,413.8	
			4	16,406.0	
			5	16,572.5	
			6	16,573.4	
	II-5	97,839.3	1	16,633.5	주1,2) 필지 분할 가능
			2	16,521.5	
			3	16,568.8	
			4	15,976.7	
			5	16,029.1	
			6	16,109.7	

주1) II-4~5가구의 필지는 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 가능

주2) 필지합병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지 분할 요건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※ 획지계획 변경으로 지정 획지는 필지로 변경하고, 필지로 변경된 선은 변경할 수 없으며, 결정된 필지 안에서 최소필지규모 등의 요건 충족 시 분할가능

● II-4~5가구의 필지분할 요건

구 분	분할요건	기 타
필지형태	정방형 또는 장방형(1:1~2이하)	세가지 요건 충족 시 필지분할 가능 ※ 분할된 필지의 합병시 동일요건을 적용하여 합병토록 함
필지규모	최소필지규모 3,500㎡ 이상	
전면도로	1면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	

■ 상업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비 고
				면적(㎡)	
계			54획지	147,500.2	
III	III-1	8,390.7	1	2,028.9	
			2	2,151.2	
			3	2,048.9	
			4	2,161.7	
	III-2	11,907.5	1	1,485.9	
			2	1,551.6	
			3	1,726.4	
			4	1,786.0	
			5	1,232.6	
			6	1,255.0	
			7	1,419.0	
			8	1,451.0	
	III-3	13,843.6	1	1,819.5	
			2	1,817.1	
			3	2,099.5	
			4	2,027.1	
			5	1,462.5	
			6	1,353.9	
			7	1,713.0	
			8	1,551.0	
	III-4	13,991.0	1	1,380.0	
			2	1,379.0	
			3	1,404.0	
			4	1,391.0	
			5	1,417.0	
			6	1,391.0	
			7	1,430.0	
			8	1,391.0	
			9	1,426.0	
			10	1,382.0	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m ²)	위 치	획 지	비 고
				면적(m ²)	
III	III-5	13,281.0	1	1,501.0	
			2	1,471.0	
			3	1,525.0	
			4	1,455.0	
			5	1,525.0	
			6	1,406.0	
			7	1,525.0	
			8	1,357.0	
			9	1,516.0	
	III-6	8,534.0	1	2,000.0	
			2	2,077.0	
			3	2,196.0	
			4	2,261.0	
	III-7	67,030.5	1	10,964.0	
			2	11,738.0	
			3	15,367.5	
			5	7,171.0	
			6	7,121.0	
			7	6,956.0	
			8	7,713.0	
			III-8	10,521.9	1
	2	2,769.0			
	3	2,541.0			
	4	2,655.7			

■ 자연녹지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비 고
				면적(㎡)	
계			2획지	1,837	
IV	IV-1	1,837.0	1	1,137.0	
			2	700.0	

■ 기반시설용지(변경없음)

- 공공·문화체육시설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
계			4필지	10,400.5	-
V	V-1	10,400.5	원창동 381-39번지	3,443.1	
			원창동 381-123번지	3,445.9	
			원창동 381-125번지	1,756.3	
			원창동 381-124번지	1,755.2	

- 주차장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비 고
				면적(㎡)	
계			3 획지	7,724.5	-
V	V-2	5,642.0	1	5,642.0	-
	V-3	1,300.0	1	1,300.0	-
	V-5	782.5	1	782.5	-

- 유통 및 공급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위 치	획 지	비 고
				면적(㎡)	
계			1획지	98,340.0	-
V	V-4	98,340.0	1	98,340.0	-

※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(141,246.7㎡) 결정면적과 획지 면적차이는 송유관로(42,906.7㎡) 면적에 의한 차이임

■ 지원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계			35획지	7,943.8	
VII	VII-1	1,123.9	1	218.8	
			2	223.7	
			3	226.1	
			4	225.6	
			5	229.7	
	VII-2	2,289.2	1	229.9	
			2	230.0	
			3	230.1	
			4	230.3	
			5	225.7	
			6	222.8	
			7	230.3	
			8	230.3	
			9	230.0	
			10	229.8	
	VII-3	2,273.8	1	228.9	
			2	228.9	
			3	228.7	
			4	228.7	
			5	223.5	
			6	220.5	
			7	228.5	
			8	228.7	
			9	228.6	
			10	228.8	
	VII-4	2,256.9	1	227.1	
			2	227.0	
			3	227.0	
			4	227.0	
			5	221.6	
			6	218.7	
			7	227.0	
			8	227.2	
			9	227.1	
			10	227.2	

※ 필지의 합병은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, 동일한 전면도로에 인접한 필지에 한하여 허용함.

원칙적으로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으며, 합병한 필지에 한하여 당초 획지계획으로의 분할만 허용함.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■ 공업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
I	I-1(1)~1(7), 2(1) ~ 2(3)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 ○ 창고시설 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 자동차관련시설 ○ 공동주택 중 기숙사 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50% 이하		
		용적률	○ 300% 이하		
		건축한계선	○ 3m(대1-7, 대2-40, 대2-116, 중1-4, 중2-928, 중2-929, 중2-930, 중2-931, 중2-932호변)		
	I-3, 4, 5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) ○ 창고시설 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 자동차관련시설 ○ 제1종근린생활시설 ○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) ○ 판매시설 ○ 교육연구시설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○ 공동주택 중 기숙사 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50% 이하		
		용적률	○ 300% 이하		
		건축한계선	○ 3m		
	I-7, 8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) ○ 창고시설 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 자동차관련시설 ○ 판매시설(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50% 이하		
용적률		○ 300% 이하			
건축한계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로1-7호선변 : 6m ○ 도시계획도로변 : 3m(I-7-2만 적용) ○ I-8블럭 : 3m, 북측변 20m 			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
I	I-15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주택 중 기숙사 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 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) ○ 판매시설 ○ 교육연구시설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○ 공장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) ○ 창고시설 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 자동차관련시설 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50% 이하		
		용적률	○ 300% 이하		
		높 이	-		
		건축한계선	○ 3m		
I	I-9~13 (목재단지)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동주택(기숙사에 한함) 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 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○ 판매시설(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)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○ 공장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에 한함), ○ 창고시설 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 자동차관련시설 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50% 이하(주1)		
		용적률	○ 300% 이하		
		높 이	-		
		건축한계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도로변 : 건축한계선 3m ○ 건축한계선내 : 공공조경 3m ○ 교차로가각부 : 공개공지 5m 		

주1) 공장, 창고용도에 한하여 70%이하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
I	I-14(1),14(2)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 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) ○ 문화 및 집회시설 ○ 판매시설 ○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은 제외) ○ 교육연구시설 ○ 운동시설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○ 공장 ○ 창고시설 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○ 자동차관련시설 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50% 이하		
		용적률	○ 300% 이하		
		건축한계선	○ 도시계획도로변 : 3m(단, 대2-29호선변 : 6m)		
II	II- 1, 2, 3, 4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도시형 공장, 지식산업센터에 한함), ○ 창고시설 ○ 판매시설(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, 다만,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) ○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포함) 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휴게음식점에 한함) 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공연장, 종교집회장, 사무소, 금융업소, 자동차영업소에 한함)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70% 이하		
		용적률	○ 400% 이하		
		건축한계선	○ 2m, 광로3-3호변 : 5m		
	II-5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도시형 공장, 지식산업센터에 한함) ○ 창고시설 ○ 판매시설(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) 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50% 이하		
		용적률	○ 300% 이하		
		건축한계선	○ 2m, 광로3-3호변 : 5m		

■ 상업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			
III	III- 1~6, 8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 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 ○ 문화 및 집회시설 ○ 판매시설 ○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 제외) ○ 교육연구시설 ○ 운동시설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제외) ○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에 한함) ○ 위락시설 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○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○ 방송통신시설 ○ 관광휴게시설 			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			
		건폐율	○ 70% 이하					
		용적률	○ 600% 이하					
		형 태	○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					
		색 채	○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					
		건축한계선	○ 3m, 대로1-7호변: 6m ○ 공공보행통로: 동서측 3m, 남북측 5m, R=12.5m					
		III	III- 7	용 도	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 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 ○ 문화및집회시설 ○ 판매시설 ○ 의료시설(정신병원, 격리병원 제외) ○ 교육연구시설 ○ 운동시설 ○ 업무시설(오피스텔제외) ○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에 한함) ○ 위락시설 ○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○ 방송통신시설 ○ 관광휴게시설 	
			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		건폐율		○ 70% 이하		
				용적률		○ 800% 이하		
				형 태		○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		
색 채	○ 건축물에 관한 계획 참조							
건축한계선	○ 중봉로변 : 공공조경 6m, 건축한계선 15m ○ 보행자도로변 : 건축한계선 6m ○ 대로1-7호변 : 건축한계선 6m ○ 중로2-1호변 : 건축한계선 3m							

■ 자연녹지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
IV	IV-1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 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 ○ 문화 및 집회시설 ○ 판매시설(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, 대형할인점,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), ○ 공장(첨단업종의 공장, 지식산업센터, 도정공장, 식품공장) ○ 의료시설 ○ 교육연구시설 ○ 운동시설 ○ 창고시설 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위험물제조소 제외) ○ 자동차관련시설 ○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○ 관광휴게시설 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20% 이하		
		용적률	○ 80% 이하		
		건축한계선	○ 3m		

■ 기반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V	V-1 (공공문화체육시설)	지정용도	○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공공·문화체육시설
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○ 50% 이하
		용적률	○ 300% 이하
		형 태	○ 담장은 1.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 설치를 권장
		건축선	○ 건축한계선 : 3m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V	V-2, 3, 5 (주차장)	지정용도	○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주차장(단, 주차전용건축물 제외)
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○ 70% 이하
		용적률	○ 400% 이하
		형 태	○ 담장은 1.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 설치를 권장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V	V-4 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)	지정용도	○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
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○ 20% 이하
		용적률	○ 80% 이하
		형 태	○ 담장은 1.2m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형 설치를 권장
		건축선	○ 건축한계선 : 3m, 북측 청라경계부 건축한계선 : 20m

■ 지원시설용지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	
VII	VII-1~4	용 도	허 용	○ 단독주택(단, 획지당 1세대에 한하여 지하층 및 1층 외에 입지하는 경우만 허용) 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 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 ○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에 한함) ○ 의료시설(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에 한함) ○ 노유자시설(노인복지시설 제외) ○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, 세차장, 정비공장에 한함)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
		건폐율	○ 70% 이하		
		용적률	○ 250% 이하		
		높 이	○ 5층 이하		
		건축한계선	○ 도시계획도로변 : 전면공지 1m		

3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(북항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한함)(변경없음)

■ 교통처리계획

구분	계획내용
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지내 차량진출입 -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한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버스정차대, 공원경계부,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구간은 차량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. - 지원시설용지 내 차량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의 가각모서리에는 설치할 수 없다.

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
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구역	<p>전면공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전면공지”라 함은 건축선,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·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. 이때,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. ○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- 전면공지에는 ‘보행지장물’을 설치할 수 없다. 다만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-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도록 한다. (차량진출입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) - 전면공지는 연결한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.
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구역	<p>공개공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공개공지”라 함은 건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. ○ 공개공지 조성기준 - 전면도로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,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 - 공개공지 폭은 5m 이상이어야 하며,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.
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구역	<p>공공조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공공조경”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·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,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,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, 소음억제,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. 이때, ‘공공조경’은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. ○ 공공조경의 조성기준은 건축법 제42조(대지의 조경)의 기준에 준하여 조성하여야 하며, 공공조경으로 조성된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전부 산입한다. ○ 공공조경 내 차량진출입구는 필지별로 2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차량진출입구 설치 구간의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IV. 지형도면 : 게재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/>)에서 열람 가능

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23-2329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900호선) 공사완료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3-175호(2023. 10. 10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공사 완료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900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3. 11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

-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88-7번지 외 2필지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900호선)
- 명칭: 원창동 복합물류센터 주변도로(중로2-900호선) 확장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연장(m)				면적 (㎡)
				결정	금회	결정	기시행	금회	잔여	
도로	중로	2	900	15 (15~18.5)	15 (15~18.5)	266	176	90	-	269.4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: 페블스톤엠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김민하

○ 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, 교보타워 A동 7층

5. 사업기간: 2022. 12. 1. ~ 2023. 10. 12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-2344호

도시관리계획 【공원조성계획: 검단17호근린공원】 결정(변경)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

도시관리계획[공원조성계획: 검단17호근린공원] 결정(변경) 입안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2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(공원과 ☎032-560-4802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23. 11. 13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공원 개요

- 공 원 명: 검단17호근린공원
- 위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9번지 일원
- 면 적: 49,356㎡

2.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사유

- 대상지 내 현황도로 반영 및 자연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, 공원 기능이 저해 받지 않도록 공원시설(동선 등)을 변경하고자 함.

3.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공람기간: 2023. 11. 13. ~ 2023. 11. 28.
- 의견제출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람장소: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과(☎032-560-4802)

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

붙임 도시관리계획[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계획] 결정(변경) 조서 1부.

도시관리계획(검단17호근린공원)조성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총괄표(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9번지 일원)

구 분	변 경 전						변 경 후						비 고		
	부지면적 (㎡)	시설면적 (㎡)	건 축 물			공 작 물 (기)	부지면적 (㎡)	시설면적 (㎡)	건 축 물			공 작 물 (기)			
			동수 (동)	바닥 면적 (㎡)	연 면적 (㎡)				동수 (동)	바닥 면적 (㎡)	연 면적 (㎡)				
계	51,000.0	10,331.8	1	159.63	151.38	51	49,356.0	10,052.2	1	159.63	151.38	51			
공 원 시 설	시 설 계	10,331.8	10,331.8	-	-	-	-	10,052.2	-	-	-	-	51		
	기 반 시 설	소계	6,515.8	6,515.8	-	-	-	-	6,055.2	-	-	-	-	-	
		도로	5,514.8	5,514.8	-	-	-	-	5,306.2	-	-	-	-	-	
		광장	1,001.0	1,001	-	-	-	-	749.0	-	-	-	-	-	
	유희시설	594.0	594	-	-	-	4	775.0	-	-	-	-	4		
	휴양시설	918.0	918	-	-	-	38	918.0	-	-	-	-	38		
	운동시설	1,004.0	1,004	-	-	-	4	1,004.0	-	-	-	-	4		
	편익시설	1,044.0	1,044	-	-	-	1	1,044.0	-	-	-	-	1		
	관리시설	256.0	256	1	159.63	151.38	4	256.0	-	1	159.63	151.38	4		
	녹지 / 기타	40,668.2	-	-	-	-	-	39,303.8	-	-	-	-	-		
시설율(% (법정 % 이하))	· 시설율 : 20.26%(법정 40%이하) · 녹지율 : 79.74% · 건폐율 : 0.31%(법정 15%)						· 시설율 : 20.36%(법정 40%이하) · 녹지율 : 79.64% · 건폐율 : 0.31%(법정 15%)								

나.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변 경 전							변 경 후							비 고
		부호	부지 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건축물			공 작 물 (기)	부호	부지 면적 (㎡)	시설 면적 (㎡)	건축물(㎡)			공 작 물 (기)	
					동 수 (동)	바 다 면 적 (㎡)	연 면 적 (㎡)					동 수 (동)	바 다 면 적 (㎡)	연 면 적 (㎡)		
합계		-	51,000.0	10,331.8	1	159.63	151.38	51	-	49,356.0	10,052.2	1	159.63	151.38	51	
기반 시설	계	-	6,515.8	6,515.8		-	-	-	-	6,055	6,055		-	-	-	
	도로	-	5,514.8	5,514.8		-	-	-	도로	5,306.2	5,306.2		-	-	-	
	광장	가	1,001	1,001		-	-	-	가	749	749		-	-	-	
		가-1	(122)	(122)		-	-	-	가-1	122	122		-	-	-	
		가-2	(252)	(252)		-	-	-	가-2	627	627		-	-	-	
가-3		(627)	(627)		-	-	-	-	-	-		-	-	-		
계	-	918	918		-	-	38	-	918	918		-	-	38		
휴양 시설	쉼터1	나-1	94	94		-	-	-	나-1	94	94		-	-	-	
	쉼터2	나-2	25	25		-	-	-	나-2	25	25		-	-	-	
	쉼터3	나-3	25	25		-	-	-	나-3	25	25		-	-	-	
	쉼터4	나-4	25	25		-	-	-	나-4	25	25		-	-	-	
	쉼터5	나-5	25	25		-	-	-	나-5	25	25		-	-	-	
	쉼터6	나-6	20	20		-	-	-	나-6	20	20		-	-	-	
	쉼터7	나-7	361	361		-	-	-	나-7	361	361		-	-	-	
	쉼터8	나-8	160	160		-	-	-	나-8	160	160		-	-	-	
	쉼터9	나-9	53	53		-	-	-	나-9	53	53		-	-	-	
	쉼터10	나-10	130	130		-	-	-	나-10	130	130		-	-	-	
	파고라	①	-	-		-	-	5	①	-	-		-	-	5	
	야외테이블	②	-	-		-	-	9	②	-	-		-	-	9	
	등의자	③	-	-		-	-	24	③	-	-		-	-	24	
계	-	1,004	1,004		-	-	4	-	1,004	1,004		-	-	4		
운동 시설	족구장	다	837	837		-	-	-	다	837	837		-	-	-	
	체력단련장	라	167	167		-	-	-	라	167	167		-	-	-	
	체력단련시설	④	-	-		-	-	4	④	-	-		-	-	4	
계	-	594	594		-	-	4	-	775	775		-	-	4		
유희 시설	놀이터1	마	366	366		-	-	-	마	366	366		-	-	-	
	놀이터2	바	132	132		-	-	-	바	409	409		-	-	-	
	놀이터3	사	96	96		-	-	-	-	-	-		-	-	-	
	숲체험놀이	⑤	-	-		-	-	4	⑤	-	-		-	-	4	
계	-	1,044	1,044		-	-	-	-	1,044	1,044		-	-	1		
편의 시설	주차장1	아	1,031	1,031		-	-	-	아	1,031	1,031		-	-	-	30면
	자전거보관대	자	13	13		-	-	-	자	13	13		-	-	1	
계	-	256	256		159.63	151.38	4	-	256	256		159.63	151.38			
관리 시설	관리사무소	차	256	256		159.63	151.38	-	차	256	256		159.63	151.38	-	
	CCTV	⑥	-	-		-	-	4	⑥	-	-		-	-	4	
녹지 및 기타			40,668.2		녹지율: 79.7%					39,303.8		녹지율: 79.6%				

다. 도로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 원 (m)	연 장 (m)	면 적 (㎡)	기 능	기 점	종 점	비고
기정	합계				2,266.6	5,514.8	-	-	-	
변경	합계				2,031.5	5,306.5				
기정	소로	3	1	6	30.4	182.4	진입로	남측계	주차장	
변경	소로	3	1	6	26.5	159.0	진입로	남측계	주차장	
기정	소로	3	2	6	11.9	71.4	진입로	남측계	주차장	
변경	소로	3	2	6	7.8	46.8	진입로	남측계	주차장	
기정	소로	3	3	5-6	43.3	238.2	연결로	동측계	동측계	
기정	소로	3	4	2	414.6	829.2	연결로	남측계	광장2	
변경	소로	3	4	2	186.4	372.8	연결로	남측계	소로10	
기정	소로	3	5	2	58.6	117.2	연결로	남측계	소로7	
변경	소로	3	5	2	54.7	109.4	연결로	남측계	소로7	
기정	소로	3	6	2	96.5	193	진입로	남측계	소로4	
변경	소로	3	6	6	86.1	516.6	진입로	서측계	서측계	
기정	소로	3	7	2-6	99.8	399.2	연결로	소로5	쉽터10	
기정	소로	3	8	3	211.7	635.1	연결로	소로7	소로38	
변경	소로	3	8	3	168.3	504.9	연결로	소로4	소로36	
기정	소로	3	9	2	3.2	6.4	연결로	북측계	소로18	
기정	소로	3	10	2	106.7	213.4	연결로	소로4	소로8	
변경	소로	3	10	2	242.2	484.4	연결로	체력단련장	소로8	
기정	소로	3	11	2	86.3	172.6	연결로	광장1	소로8	
기정	소로	3	12	2	38.7	77.4	연결로	소로4	소로10	
변경	소로	3	12	2	37.8	75.6	연결로	소로4	소로10	
기정	소로	3	13	2	17.4	34.8	연결로	소로10	쉽터9	
기정	소로	3	14	3	11	33.0	연결로	쉽터9	소로16	
기정	소로	3	15	3	13.7	41.1	연결로	광장2	소로16	
기정	소로	3	16	3	112.9	338.7	연결로	광장2	소로8	
변경	소로	3	16	3	110.7	332.1	연결로	소로10	소로8	
기정	소로	3	17	3	26.9	80.7	연결로	소로8	소로36	
기정	소로	3	18	2	234	468.0	연결로	광장1	쉽터8	
기정	소로	3	19	2	13.5	27.0	연결로	소로16	소로38	
기정	소로	3	20	2	29.5	59.0	연결로	쉽터6	소로18	
기정	소로	3	21	3	20.5	61.5	연결로	쉽터8	소로36	
기정	소로	3	22	3	13.4	40.2	연결로	쉽터8	광장2	
기정	소로	3	23	3	5.1	15.3	연결로	광장3	소로24	
변경	소로	3	23	3	4.0	12.0	진입로	광장2	소로10	
기정	소로	3	24	2	53.7	107.4	연결로	광장2	체력단련장	
변경	소로	3	24	2	6.4	12.8	연결로	북측계	쉽터1	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 원 (m)	연 장 (m)	면 적 (㎡)	기 능	기 점	종 점	비고
기정	소로	3	25	3	6.5	19.5	진입로	서측계	체력단련장	
변경	소로	3	25	2	128.2	256.4	연결로	쉽터1	광장2	
기정	소로	3	26	2	7.4	14.8	연결로	북측계	쉽터1	
변경	소로	3	26	1.5	10.1	15.2	연결로	체력단련장	쉽터2	
기정	소로	3	27	2	129.5	259.0	연결로	쉽터1	광장3	
변경	소로	3	27	1.5	7.1	10.7	연결로	쉽터2	소로25	
기정	소로	3	28	1.5	10.1	15.2	연결로	체력단련장	쉽터2	
변경	소로	3	28	1.5	18.2	27.3	연결로	소로25	쉽터3	
기정	소로	3	29	1.5	7.1	10.7	연결로	쉽터2	소로27	
변경	소로	3	29	1.5	29.0	43.5	연결로	쉽터3	쉽터4	
기정	소로	3	30	1.5	18.2	27.3	연결로	소로27	쉽터3	
변경	소로	3	30	1.5	5.2	7.8	연결로	쉽터4	소로35	
기정	소로	3	31	1.5	29.0	43.5	연결로	쉽터3	쉽터4	
변경	소로	3	31	1.5	12.1	18.2	연결로	쉽터4	쉽터5	
기정	소로	3	32	1.5	10.7	16.1	연결로	쉽터4	소로37	
변경	소로	3	32	1.5	6.3	9.5	연결로	쉽터5	소로18	
기정	소로	3	33	1.5	12.1	18.2	연결로	쉽터4	쉽터5	
변경	소로	3	33	1.5	16.3	24.5	연결로	소로18	소로36	
기정	소로	3	34	1.5	6.3	9.5	연결로	쉽터5	소로18	
변경	소로	3	34	1.5	6.0	9.0	진입로	광장2	쉽터3	
기정	소로	3	35	1.5	16.3	24.5	연결로	소로18	소로38	
변경	소로	3	35	2	91.5	183.0	연결로	소로18	소로25	
기정	소로	3	36	1.5	6.0	9.0	진입로	광장3	쉽터3	
변경	소로	3	36	3	97.1	291.3	진입로	소로18	쉽터7	
기정	소로	3	37	2	96.2	192.4	연결로	소로18	소로27	
변경	소로	3	37	2	61	122.0	연결로	동측계	동측계	
기정	소로	3	38	3	97.1	291.3	진입로	소로18	쉽터7	
변경	소로	3	38	-	-	-	-	-	-	
기정	소로	3	39	2	61	122.0	연결로	동측계	동측계	
변경	소로	3	39	-	-	-	-	-	-	